

### 【 법인의 CEO가 알아야 할 세금 】

국세청은 최고 경영자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법 및 세정집행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·정리하여 『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』책자를 지난 상반기에 발간하였다. 본지는 책자 내용 중 '법인의 CEO가 알아야 할 세금'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#### 1. 법인세

##### ◎ 법인세란?

-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사업년도(회계기간)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.

##### ◎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

법인의 종류		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	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	청산소득
내국	영리법인	국내외의 모든 소득	○	○
법인	비영리법인	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	○	×
외국	영리법인	국내원천소득	○	×
법인	비영리법인	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	○	×

※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2002.1.1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으나, 주택의 경우 2005.1.1 이후 양도분부터,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07.1.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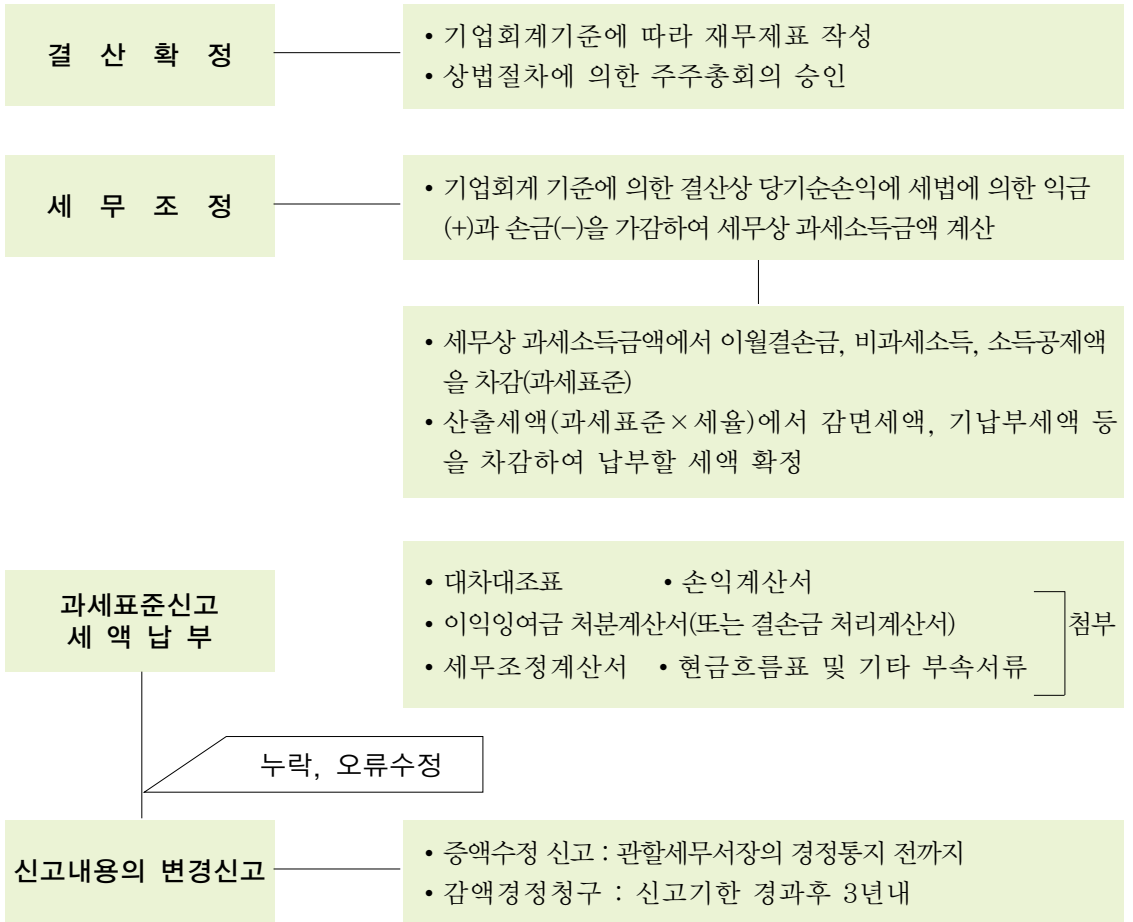
##### ◎ 법인세의 신고

-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내에 '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'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), 세무조정계산서,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서류(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)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※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.

◎ 법인세의 납부

-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.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(2천만원 초과시 50% 이하 금액)을 1월(중소기업은 45일)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◎ 법인세의 신고·납부절차



◎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

- 외부조정 신고대상법인
  -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'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'으로 고시한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 ('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'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.)

- 법인세 전자신고 확대 및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공급
  - 법인세 전자신고의 제출서식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서식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  - 다만,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(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)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(전자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(www.hometax.go.kr)참고)

## 2. 부가가치세

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써,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.

### ◎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

구분	제1기		제2기	
	신고대상	신고기간	신고대상	신고기간
예정신고	1.1~3.31사업실적	4.1~4.25	7.1~9.30사업실적	10.1~10.25
확정신고	4.1~6.30사업실적	7.1~7.25	10.1~12.31사업실적	다음해1.1~1.25

### ◎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

$$\text{매 출 세 액} - \text{매 입 세 액} = \text{납부 · 환급세액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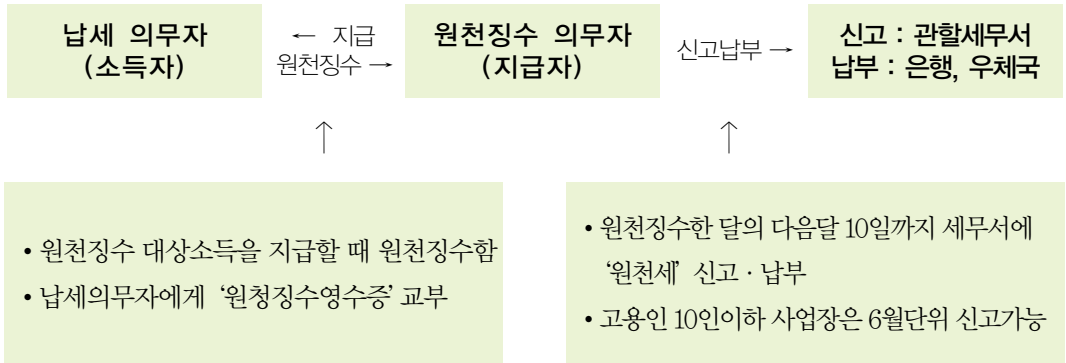
매출액 × 1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</li> <li>• 신용카드 이면확인 매입세액</li> <li>• 의제 매입세액</li> <li>•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</li> <li>• 변제대손세액</li> </ul>
	(-) 공통매입 면세분 (-)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

$$\text{납부 · 환급세액} + \text{각종가산세} = \text{차가감 납부(환급)세액}$$

### 3. 원천징수하는 세금

#### ◎ 원천징수란?

-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(원천징수의무자) 이를 받는 사람(납세의무자)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


#### ◎ 원천징수 방법

- 근로소득 : 매월 급여(상여금 포함)를 지급할 때마다 '간이세액표'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 연도 1월 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합니다.
  - 퇴직·이자·배당·기타·사업소득 :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.
- ※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'기납부세액'으로 공제받습니다.

### 4.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

#### ◎ 지출증빙서류는 정규영수증으로

-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(신용카드매출전표, 직불카드, 기명식선불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계산서)을 수취하여야 합니다.
- ※ 이를 위반할 경우 미수취한 금액의 2%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.

#### ◎ 세금계산서·계산서 합계표의 제출

- 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매입처 및 매출처별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 부가가치세

신고시마다(계산서는 1년치를 다음연도 1.31까지) 세무서에 제출(전자신고)하여야 합니다.

- ※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거나 영업부서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2%(계산서는 1%: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.5%)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.

◎ **접대비의 정규영수증 사용의무**

- 한번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(2006.2.9 이후 지출하는 경조비의 경우 1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(직불카드, 기명식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포함)을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·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습니다.
- ※ 단,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로 해당지역 내 접대비가 지출도니 장소와 동일·유사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예외가 인정됩니다.

◎ **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조서의 제출**

- 지급조서의 전자제출
  -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상대방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부본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※ 지급조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1만~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제출건당 100원, 이자·배당소득 제외)
  - ※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2%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(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%)
- 일용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 제출
  - 저소득층의 소득과약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와 비과세·분리과세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자료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)
- 골프장 경기보조 등 특수직 고용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협조
  - 대리운전, 소포배달, 간병, 골프장경기보조, 파출, 기타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자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, 용역기간 및 용역대가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명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